
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5-1-3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9. 01. 30.	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“입학전형관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
3. 원서교부 및 점수에 관한 사항
4. 편입학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입학전형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시행)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3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9. 01. 30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